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8.

발 의 자 : 정태호 · 안호영 · 이수진
박민규 · 이학영 · 김주영
이주희 · 조승래 · 조정식
정일영 · 맹성규 · 염태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예산·기금 등의 재정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·기금 등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재정정보의 공표나 재정통계의 작성 시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료 제출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,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항 후단 신설 등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효율적 활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관련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제9조(재정정보의 공표) ①·② (생 략) ③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 ④·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제9조(재정정보의 공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④·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효율적 활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관련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</u>

⑥ (생략)	<u>한다.</u>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